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2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4일, 주영길 의원(찬성 17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영길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장은 불가피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시정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엄격히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의 체계화 및 과학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시정 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서울시 공개정보 확대기조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2) 행정정보는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 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증대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 4)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13. 6. 21. ~ 2013. 6. 28.):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공표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공표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지난 제 24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의 검토 내용과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장 제출안과 차이가 나는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행정정보 공표목록 개선(안 제5조)

- 시장 제출안은 정례공표대상(9개 항목)과 수시공표대상(14개 항목)의 항목을 공통 공표목록(14개 항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12개의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일반적 포괄조항으로 명시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현행)정례공표 행정정보대상 중 4개 항목 삭제, 5개 항목 존치
 - (현행)수시공표 행정정보대상 중 8개 항목 삭제, 6개 항목 존치
- 그러나 행정정보 공표대상의 상당수를 규칙에 위임하는 개정안은 집행부에 대한 규제력이 약한 규칙을 통해 행정정보공개 범위와 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집행부의 자의(恣意)에 의한 행정정보 처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주영길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존치시키는 외에 다음 표와 같은 행정정보 공표항목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 개정 및 신설 항목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2항 8.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제5조제1항 9. <u>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현황</u> ,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제7조제2항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제5조제1항 13. <u>학술용역 등</u> 각종 용역사업 결과
<신설>	제5조제1항 14. <u>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u>
<신설>	제5조제2항 3. <u>서울특별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u>
<신설>	9. <u>감염병 발생현황</u>
<신설>	10. <u>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 결과</u>
<신설>	11. <u>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와 당해 연도의 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u>

- 위 개정내용은 집행부가 의뢰한 연구용역¹⁾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전정보공표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사전정보공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청구가 있어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으며, 정보의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1) ※ 용역명: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연구용역
 연구기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연구수행)
 연구기간(용역금액): 2012.4.25 ~ 8.24 (54,570천원)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바, 연구결과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방법 및 내부 위원 교체(안 제7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시장제출 개정안	주영길 의원 개정안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u>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참석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서면심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한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주영길 의원 개정안은 정보공개 심의회의 회의 방식에 있어서 서면심을 허용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편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서면심’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음.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을 단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라. 정보실태 주기적 점검·평가 신설(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 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 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p>

- 개정안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에 대해 연 2회 이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하겠음.
-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 2회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시기 및 평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별첨

▶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	의 건
<p>박창길 (2013. 6.28)</p>	<p>“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이번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 제출안에 비해서 집행기관의 책무로서 정보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제4조제2항),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보고하는 등(제12조)등 여러 가지 개선된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그동안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주창한 바 있는 “정책실패는 용서되어도 정보비공개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한다“, ”네거티브방식의 정보공개“ 즉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과 같이 시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내용들이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p> <p>또 조례 내에서 지칭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무엇인지 제2조에 그 내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하면 비공개를 허용하되, 일반 시민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신설을 제안합니다.</p> <p>한편 심의위원회는 직접 참석하는 대면회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서면(온라인)회의도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영길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 평가보고 조항(제12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평가보고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내용을 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을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 년 보고회수는 필요에 따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p> <p>이런 보고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생략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p>

제출자	의견
	<p>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주영길의원님의 조례안의 조례제정 이유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합리적인 입법이 되도록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p> <p>2013년 6월 2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서울시 구로구 연등로 320 승연관 1307, 02-2610-4349 연락: 박창길(010-6319-1430), 팩스: 02-6442-6334, parkc@skhu.ac.kr</p> <p>항목별 제안내용</p> <p>1. 각종위원회의 정의 입법예고안 수정안 <신설> “각종위원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시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p> <p>제안이유: ①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공식위원회뿐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문을 하는 모든 위원회는 모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p> <p>서울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의사결정과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2년 2월 말에 걸쳐 약 20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동물복지종합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약 32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내용은 일반이 모르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일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③ 서울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하여, 종래의 각종위원회를 공식위원회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정의에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p> <p>2. 정보공개 원칙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 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p>

제출자	의견
	<p>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 ? 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p> <p>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p> <p>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p> <hr/> <p>②</p> <hr/> <p>③</p> <hr/> <p>--</p> <p>④</p> <hr/> <p>⑤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한다.</p> <p>⑥ 이 조례에서 공개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p> <p>(제안이유): 박원순 시장은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런 원칙이 공개원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황종성 기획단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정보공개란 공개되어서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p> <p>물론 이런 내용들이 글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나, 다만 공개원칙으로 반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p> <p>이를테면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은 실제 실천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제3조의 지도원칙에는 포함되어 있음</p> <p>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모든 문서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2012. 7.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692793</p> <p>뉴스1. 황종성 서울시 정보기획단장. 네거티브방식의 정보공개. 2012년. 8.24. http://news1.kr/articles/788465</p>

제출자	의 견
	<p>입법예고안 수정안</p> <p><신설> 각종 위원회는 시민의 참관을 원칙으로 한다.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3. 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참관 (제안이유)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시민에 대한 원칙적인 참관을 허용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좋은 방법입니다.</p> <p>그러나 실제로 많은 위원회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p> <p>그렇다면, 시장실 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CCTV를 설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참관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p> <p>나아가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녹음을 하여서 회의록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례에 포함시켜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참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뉴스1. 정보화기획단장. 시장집무실에 CCTV. 2012년. 8.24. 4. 심의방법</p> <p>입법예고안 수정안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신설> ⑦심의회는 회의는 사안에 따라 서면회의 및 온라인회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서면회의의 대상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안이유) 심의회가 조례의 내용상 대면회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회의(또는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안전처리가 가능하여지며, 이로 인한 시간절약으로 인해 대면회의에 의한 복잡한 사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p> <p>다만 서면회의를 통해서 처리하여도 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의하거나, 온라인회의를 통해서도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온라인회의의 논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p>

제출자	의견
	<p>현재 동물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연구계획서 심의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현대아산병원등 대부분의 실험기관들이 정기적인 대면회의 외에 온라인 심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많은 시간을 요하는 정보공개심의회외의 경우에도 무조건 대면회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심의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p> <p>현대의 의사소통이론에 의하면, 의사소통 매체로서 공식문서, 이메일, 직접대면의 방법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일반화되고 있다.</p> <p>적절한 매체의 선택, 임창희, 조직행동, 비엔엠북스, 315면. 정보화시대에 대면회의외의 방법에 의한 심의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p> <p>4. 서울시의회 연차 공개현황보고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① _____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운영실태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대상이 된 각종 위원회의 숫자, 비공개된 위원회의 숫자, 비공개로 구분된 행정정보, 행정정보 비공개 이유, 행정정보와 관련하여 받은 민원과 제소를 포함한다. ③ 기타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삭제).</p> <p>(제안이유) ① 행정정보 실태 평가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를 년1회 만으로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 점검하는데 충분하지 않나가 생각한다. 또 이 정보를 서울시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을 받도록 한다.</p>

제출자	의 견
	<p>② 이 평가내용에는 정보비공개위원회 위원회의 숫자나 비공개정보의 내용과 비공개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여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정보공개법령(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료: Each agenc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hall annually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its compliance with such requirements, including a tab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agency meetings open to the public, the total number of meetings closed to the public, the reasons for closing such meetings, and a description of any litigation brought against the agency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any costs assessed against the agency in such litigation (whether or not paid by the agency).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p> <p>③ 제3항에서 또 다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게 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제1항에서 이미 점검 평가보고를 하여서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데, 또 다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하는 것은 이중적이며 업무 과중과 전시행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제1항의 평가보고가 이미 평가보고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서, 평가보고의 요건을 강화하여서, 제3항의 평가보고서 작성을 삭제한다.</p> <p>참고자료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 용역(최종보고서). 2012년 8월.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4.26.</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4.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9.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10.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이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2.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
4.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6.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7.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9. 감염병 발생현황
10.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 결과
11.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와 당해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제13조(다른 제도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p> <p><신 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p> <p><신 설>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p>
제4조(서울특별시의 책무)	<p><신 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신 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신 설> 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	<삭제>

현 행	개 정 안
<p>개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6조(삭제) <2004.11.5></p>	
<p>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현행 제7조 본문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결과 6.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4.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 행	개 정 안
7.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7.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8.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신설> 10.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신설>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신설> 12.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 <신설>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신설> 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신설>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신설> 1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합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이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p> <p>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p> <p>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p> <p>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p> <p>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p> <p>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p> <p>8.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 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개정 2012.5.22)</p> <p>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p>	<p>1.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p> <p>2.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p> <p>3. 서울특별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p> <p>4.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p> <p>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p> <p>6.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p> <p>7.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p> <p>8.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p> <p>9. 감염병 발생현황</p> <p>10.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농</p>

현 행	개 정 안
<p>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p> <p>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u>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u></p> <p>11. <u>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를 수록한 업무편람</u></p> <p>12. <u>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u></p> <p>13. <u>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u></p> <p>14. <u>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합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p> <p>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u>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 결과</u></p> <p>11. <u>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와 당해 연도의 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u>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u>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p>
<p>제9조(공개방법) ① ~ ④ (생략)</p>	<p><삭제></p>
<p>제10조(비용의 부담) (생략)</p>	<p>제6조(비용의 부담) (현행 제10조와 같음)</p>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u>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 정보</u></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11조제1항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 중</u> 외부 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생략)</p> <p>⑤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u>관할에</u> 대한 세부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u>외부인사중</u> _____</p> <p>-----.</p> <p>③ (현행 제11조제3항과 같음)</p> <p>④ <u>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현행 제11조제4항과 같음)</p> <p>⑥ _____ <u>운영방법 등에</u> _____</p> <p>_____ <u>규칙 또는 규정</u> _____.</p>
<p><u>제12조</u>(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u>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u></p> <p>3. <u>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u></p>	<p><u>제8조</u>(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현행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음)</p> <p>2. <u>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u></p> <p>3. <u>기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_____</p> <p>_____</p>
<p><u>제13조</u>(심의회의 운영) <u>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삭제></p>
<p><u>제14조</u>(의견청취) _____</p> <p>_____ <u>청구인</u> _____</p> <p>_____</p> <p>_____.</p>	<p><u>제9조</u>(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u>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u>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의 책무) (생략)	제10조(위원의 책무)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생략)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현행 제16조 제1항과 같음)
<p>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u>언론행정담당관</u> 및 <u>도시계획과장</u>으로 한다.</p>	<p>② _____<u>언론담당관</u> -- <u>시설계획과장</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p>
<p>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현행 제17조제1항과 같음)</p> <p>② (현행 제17조제2항과 같음)</p>
제18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8조와 같음)